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2 . 1 0 . 6 . (목)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92
발의일자 : 2022. 09. 23.
회부일자 : 2022. 09. 28.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연구식 의원 외 18명

2. 제안 이유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해당부서)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2년 9월 28일 ~ 10월 4일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2019. 6. 12. 시행) 됨에 따라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사 양성과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2011년에 개정¹⁾되어, 2013년 경상북도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후 2018년 12월 규제개선²⁾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인증제도²⁾를 폐지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2019년 6월 시행되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개설·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폐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의2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도입·시행 되어 왔으나, 2011년 「관광진흥법」(2011년 4월)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1년 10월) 개정을 통해 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는 2011년 4월 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2012년부터는 신규양성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을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고시로 제정함. 이 고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활용에 제약이 되어왔음.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에 경상북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개설·운영]

「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의2는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종합 의견

-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발굴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말 기준, 경북도내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재, 박물관, 공항, 터미널 등 총 135개 장소에 40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도내 관광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광객 재방문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1. 경북도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사업 내역

붙임1

경북도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시 군	배치장소	인 원	시 군	배치장소	인 원
계	135개소	409	의성 (4)	고운사, 금성면고분군, 낙단보, 최치원문학관	8
포항 (10)	구룡포근대문화역사관, 보경사, 오어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여객선터미널, 호미곶, 포항공항, 포항역,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월포역	33	청송 (2)	시외버스터미널안내소, 송소고택	7
경주 (18)	대릉원, 불국사, 분황사, 석굴암, 첨성대, 동궁과월지, 원성왕릉, 김유신장군묘, 감은사지, 무열왕릉, 옥산서원, 오릉, 동리목월문학관, 경주향교, 신라대종 타종체험관, 포석정, 통일전, 양동마을	57	영양 (4)	두들마을, 선바위관광지, 주실마을, 연당마을	7
김천 (4)	직지사, 김산향교, 하로서원, 청암사	13	영덕 (4)	어촌민속전시관, 신돌석장군유적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7
안동 (11)	도산서원, 민속박물관, 병산서원, 봉정사, 제비원석불, 월영고, 태사묘, 하회마을, 임청각, 안동버스터미널, 선비순례길	58	청도 (5)	청도석빙고, 운문사, 청도역, 신지생태공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12
구미 (6)	금오산, 채미정, 도리사, 성리학역사관, 신라불교초전지, 야은역사관	18	고령 (9)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개실마을, 고령군관광안내소, 대가야생활촌, 개경포공원, 장기리 압각화공원	23
영주 (7)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 인삼박물관, 공세계과학관, 영주역	36	성주 (7)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회연서원, 성박숲, 성산동고분군전시관, 태실문화관,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14
영천 (5)	노계문학관, 임고서원, 별별미술마을, 전투메모리얼파크, 화랑설화마을	18	칠곡 (2)	가산산성 진남문, 칠곡보	7
상주 (6)	향청, 경천섬, 경천대, 회상나루관광지, 명주박물관, 옥동서원	11	예천 (5)	회룡포, 삼강주막, 초간정, 금당실마을, 용문사	12
문경 (6)	문경새재, 문경옛길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문경도자기박물관, 문경관광안내소, 단산모노레일	24	봉화 (5)	청량산, 축서사, 닭실마을, 정자문화생활관, 산타마을	12
경산 (2)	경산종합관광안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4	울진 (2)	성류굴, 남사고유적지	6
군위 (7)	김수환추기경생가, 삼존석굴, 화본역, 인각사, 삼국유사테마파크, 범주사, 한밤마을	16	울릉 (4)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 관음도, 나리분지	6

붙임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사업 내역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사업 내역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지원단가 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소계		5,629	947	982	3,700	
2022	육성사업 (활동비, 환경개선 상해보험료)	5,474	887	887	3,700	(활동비) 70천원/1일 180일 한도 (환경개선) 600천 원/1 인 (상해) 150천 원/1 인
	교육사업	120	60	60		
	역량강화	35		35		
소계		4,590	947	760	2,883	
2021	활용사업	4,147	829	622	2,696	60천원/1일, 180일 한도
	환경개선	230	46	34	150	600천원/1 인
	상해보험료지원	58	12	9	37	150천원/1 인
	교육사업	120	60	60		
	역량강화	35		35		
소계		5,405	947	894	3,564	
2020	활용사업	4,443	771	648	3,024	60천원/1일, 180일 한도
	환경개선	720	108	108	504	1,800천원/1 인
	상해보험료지원	52	8	8	36	130천원/1 인
	교육사업	120	60	60		
	역량강화	40		40		
	해외선진지벤치마킹	30		30		